1 군서초등학교 학칙

개정 2018. 03. 26.
개정 2019. 02. 20.
개정 2020. 02. 20.
개정 2023. 04. 12.
개정 2023. 10.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군서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517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매년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6월 15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휴가
6. 기타 휴가(각종 재량휴업일 등)

② 제1항 각 호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 경우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 학급 수는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 학생 정원은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당 정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평가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9조(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수업일수) 연간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1, 2항에 의거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주5일 수업제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② 그 밖에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와 관련한 기본 사항은 본교 평가계획에 따르며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평가참여 방법이 포함된 평가조정계획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수료·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원 외 관리대상자가 재입학한 경우의 수료 또는 졸업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른다.

③ 수업일수 부족(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으로 해당 학년 교육

과정을 미수료하면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교육활동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시 명예졸업으로 처리한다.

제13조(졸업장)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4조(조기진급·졸업·진학**)**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부여 등을 할 수 있다.

①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1. (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2.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3. (조기진급·졸업 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

가. 학교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나.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다. 개별 교과목 조기이수 인정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야 한다.

4. (조기진급·졸업)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위원회 평가를 통과하여 조기졸업이 확정된 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하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 졸업이 된다.

5.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

③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항 및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④ 상급학교 조기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1.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학교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3. (상급학교 전형응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한다.

4.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다. 위원회의 위원은 본교 초등 교사 전원과 초등 특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역할

가.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 위원이 나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⑥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시기 및 이수 기준)

1.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 시기는 학년말로 한다.

2. 교과목별 이수 기준은 평가 결과 교과목별 성취 기준이 80%이상인 자로 한다.

제5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및 휴학

제1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 • 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6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조기입학결정) 만 5세아의 입학은 학부모의 선택권에 따른다. 단, 조기

입학의 경우 신청기한을 준수하되, 기한 이후 학부모의 추가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학교장이 학생 수용요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8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전학)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면제 • 유예)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면제 및 유예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스스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유예신청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에 의거 유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50일 미만의 숙려기간을 둔다.

④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유예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⑤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⑥ 유예한 자의 복학 시기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익일(또는 익월)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유예가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초 또는 일(또는 월)까지 유예를 연기하여 복학할 수 있다.

제21조(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20조 제2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불법체류외국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전·편입학)

①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교육기회확대를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취학 및 전·편입학을 허가한다.

②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귀국한 자녀, 불법체류외국인 자녀가 학구 내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 계약서나 입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등)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 이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과정 이수 능력 인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3인~5인으로 한다.

④ 교육과정 이수 능력 평가는 기초적인 국어과의 읽기와 쓰기 영역, 수학과의 연산영역 중 기초적인 셈하기(가감승제) 영역에 한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도구는 교육과정 이수 능력 인정 평가위원회에서 자체 제작하여 실시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 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이수 능력의 정도에 따라 해당 학년에 전·편입학을 허가한다.

⑥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특례입학대상자)가 전.입학을 하고자 지원하는 때에는 학교장은 서류심사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학년에 취학 및 전·편입학 할 수 있다.

제23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2항 및 제27조의 2항에 의하여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찰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학업중단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 의무 대상 아동이나 학생 등의 취학 관리, 미취학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하고 경찰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제6장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제24조(구성) ① 위의 제14조에서 정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수는 교과별 3인~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평가 대상 교과목수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방법 및 도구 결정
3. 교과목별 성취도 수준 결정
4. 기타 제 문제 협의

제25조(운영)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7장　기타 비용의 징수

제26조(기타비용징수) 학교교육과정상 학부모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징수한다.

제8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7조(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

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다. 단, 장애학생과 다문화 학생 대상 학교폭력의 경우,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하며, 장애학생과 다문화 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징계를 할 때는 본교 생활규정에 따른다.

제9장 체험학습

제29조(학교단위 체험학습)

①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월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체험학습 실시 전에는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학년단위 체험학습)

① 학년교육과정에 의거 월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체험학습 실시 전에는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3일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 위탁 체험학습을 허락한다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3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34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③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 사항

제35조(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6조(목적) 이 규칙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8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9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40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42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 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3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5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46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8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50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5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55조(학업중단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6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13장 학칙 변경 절차

제57조(학칙개정) ① 학교장이 학칙을 변경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③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교사위원 2인, 학부모 위원 2인, 학생위원 2인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⑦ (개정안 발의)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적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의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들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문헌조사 및 의견 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헌조사 및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⑨ (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⑩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⑪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하되 제 22조의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장, 제4장, 제5장, 제8장, 제9장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장,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장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9일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장, 제8장 제11장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한다.
7.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2월 10일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